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설계년월일	2026. 09. .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목 차

I.	설	계	설	명	서
II.	일	반	과	업	지 시 서
III.	특	별	과	업	지 시 서
IV.	보		안	대	책
V.	기		타	사	항
VI.	예	정	공	정	표
VII.	설	계	예	산	서
VIII.	위		치		도

I . 설 계 설 명 서

I.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사업계획 변경(사업 면적/규모 변경, 저감시설 위치·공법 변경 등)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개요

용역명	연장(km)	위치	비고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신설 : 1.7 확장 : 2.1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 판부면 금대리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II.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사업노선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도로 건설에 따라 공사 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다. 대안노선의 환경성 비교·검토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예측 및 평가

마.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바.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사.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자료 작성 및 지원

자. 종합평가 및 결론

3. 과업의 일반지침

- 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시행한다.
- 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의하여 작성한다.
-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 수행중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 마.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 또는 추가한다.
-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 (1) 사업 개요 검토
 -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 (2) 환경영향 요인파악
 - 공사 중 및 공사 후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5)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해석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2) 조사항목

가) 대기환경

(1) 기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 대기 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도로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지점 및 조사항목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지점 : 2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SO₂, NO₂, CO, O₃, Pb, 벤젠 등 8개 항목
- 조사횟수 : 1회

(마)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나) 수환경

(1) 수질(지표)

(가) 계획노선 주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와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조사지점 : 3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9개 항목
- 조사횟수 : 1회

다) 토지환경

(1)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라) 자연생태환경

(1) 동·식물상(육상·육수)

(가) 육상 동·식물상

1)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2)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1) 수생식물군집

- 종 조성, 종 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2) 수생동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3)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 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마) 생활환경

(1)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지점 : 3지점(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 조사항목 : 소음도, 진동도

- 조사횟수 : 1회

(2) 경관

(가)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 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립상황, 초지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나)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다)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조사범위는 관리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로 하되 도로사업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지역경관의 형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 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라. 저감방안

- (1)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각 항목별로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전체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제시한다.

마.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수립

- (1)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견되는 영향중 환경 보전 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건설 기간중 동영향의 발생여부 및 발생과정을 조사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2)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는 환경시설물의 효과적 운영관리방안 및 유지 보수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 (1) 환경현황 및 예측결과 그리고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요약·정리하여 기술하고 불가피한 악영향과 저감대책 시행 후의 저감효과 등을 기술한

사.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변경협의) 작성

- (1)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사항

- 가. 평가지역의 조사범위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 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다.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요인 및 대상항목 설정, 평가기준, 예측기법 및 조사범위와 평가서 작성에 대한 과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후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바. 부문별 과업수행 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사.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문 업무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권위자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 아.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환경 현황과 지역정보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자. 평가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

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에 의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개월(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다. 과업대상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기지연 되었을 경우
-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 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구분	제 출 기 한	성과품 목록	수 량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준공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CD(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5부 3장

IV. 보 안 대 책

IV.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수행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V. 기 타 사 항

V. 기 타 사 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자료는 본 업무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8.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동등이상 자격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VI. 예 정 공 정 표

VI.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전체) - 6개월(180일)

[illegible]

VII.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설계년월일	2026. 09. .					

2026년도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예산서

☐ 과업내용

- 환경영향평가(L=3.80km) 1식

구 분	용 역 비
도급예정액	금 154,100,000원
1.공급가액	금 140,090,909원
2.부가가치세	금 14,009,091원



국 토 교 통 부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VIII. 위치도

